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생산시설 선정 공모 관련

예상질의(Q&A)

· 예상질의 답변서 외 추가 질의는 이메일(parkbj36@koddi.or.kr)
및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유선(02-3433-0786, 0710) 문의 필요

2024. 2.

한국장애인개발원
Korea Disabled People's Development Institute

목 차

◈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

1.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? ····· 1

2.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생산시설 선정 공모는 무엇입니까? ···· 1

3.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····· 2

4. 최종 생산시설로 선정되면 지원금 5,1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····· 2

5.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해 자부담금을 의무로 포함해야 하나요? ····· 3

6. 업무협약 기간 중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협약이 해지된다면 지원금을 반납하나요? · 3

◈ 공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제출 관련

7. 공모신청서 제출 시 신규 품목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 ····· 4

8. 동 공모사업 신청자격 확인서에서 진단내용에 비해당 항목이 있음에도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? ····· 4

9. 가점별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 ····· 5

◈ 생산시설 선정 심사 관련

10. 선정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? ····· 8

11. 심사 평가 항목은 무엇인가요? ····· 8

Ⅰ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

Q1)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?

□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들의 **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다수의 의견 제시에 따라 신규 품목 발굴·개발·생산 등 을 지원하는 사업**입니다.

○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제안 공모전에서 **선정된 품목 (생리대, 전자칠판, 의료용거즈붕대, 야외운동기구, 델리네이터)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으로 지정**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선정하여 **신규 품목 개발, 지정,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을 지원**합니다.

<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흐름도 >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전 국민 대상 신규 품목 발굴	신규 사업 연계 생산시설 선정	생산시설 품목 개발 및 지정	공공기관 우선구매 마케팅 등 연계

Q2)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생산시설 선정 공모는 무엇입니까?

□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**신규 품목 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된 품목 (생리대, 전자칠판, 의료용거즈붕대, 야외운동기구, 델리네이터)을 개발·생산하여 신규 품목으로 지정받고 우선구매기관 등 수요처로 납품 수행 할 생산시설을 선정**하는 것입니다.

○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업무협약 이후 **생산시설별 평균 5,100만원*을 지원금으로 교부**하고

○ 지원금 **사용범위는 신규 품목생산 및 납품에 대한 ▲생산설비 구입 ▲필수 시험·인증비용 ▲그 밖에 개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출**할 수 있습니다.

※ 지원금은 동 공모에 지원한 생산시설의 지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Q3)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최종 **생산시설로 선정되면 업무협약 체결, e나라도움 교부금 시청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, 보조금 교부 순으로 업무가 진행**됩니다.

○ **업무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**이고, 지원금은 **지원금을 교부한 당해 회계연도('24년)의 11월 30일까지 전액 지출**하고 **정산보고 및 사업결과보고를 완료**하여야 합니다.

○ 또한 신규 품목에 대한 **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지정도 지원금을 교부한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지정 심사를 완료**해야 합니다.

Q4) 최종 생산시설로 선정되면 지원금 5,1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□ 생산시설에 교부할 지원금은 **총 사업비(255,000천원)내 생산시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생산시설별 평균 5,100만원을 지원**할 예정입니다.

※ 지원금은 동 공모에 지원한 생산시설의 지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선정된 생산시설은 **지원금 교부 신청시 생산설비, 시험·인증비에 대한 비교 견적서 등을 제출**하므로 **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예산계획 작성시에 업체에서 제공한 견적서를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구비**하시기 바랍니다.

Q5)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해 자부담금을 의무로 포함해야 하나요?

□ 사업비 **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**. 다만 **총 사업비의 10%를 자부담금으로 포함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면 서류심사에서 가점으로 인정**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선정된 생산시설은 **사업비 지출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을 집행**해야 합니다. 향후 이와 관련하여 자부담금 집행에 대해 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.

Q6) 업무협약 기간 중 협약 해지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?

□ **업무협약 체결기간 동안 협약서에 명기한 협약해지 사유 등이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개발원에 반환**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○ 그리고 **선정 생산시설의 법인은** 생산시설이 개발원으로부터 **지원금을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금이 원활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**해야 합니다.

Ⅱ 공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제출 관련

Q7) 공모신청서 제출 시 신규 품목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□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**생산시설은 신규 품목별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**합니다.

○ 다수의 생산시설에 지원금 지원을 위해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는 **다수의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시설 매출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함**입니다.

Q8) 동 공모사업 신청자격 확인서에서 진단내용에 비해당 항목이 있음에도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?

□ 동 공모사업 **신청자격 확인서 진단내용에 비해당 항목이 한(1) 개라도 있으면 공모 신청 지원이 불가능**합니다.

○ 향후 **자격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**되므로 생산시설은 공모사업 신청시 **자격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 “신청일 기준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권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” 중 **행정처분이라 함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시행령 제18조**(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)를 말하고

- **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**은 **행정처분의 가중 처분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**을 말합니다.

Q9) 가점별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?

□ 가점별 **증빙자료는 하기표의 자료를 출력하여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공모사업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**하시면 됩니다.

○ 가점 **증빙자료 미제출, 증빙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** 제출시에 **직인 등 날인, 비율, 금액 등을 최종확인**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점내용	증빙자료 설명
① **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** 가점기준: 10% 이상 자부담 3점/ 해당없음 0점	⇒ 최종 **선정 생산시설 대상 공모자부담금 확약서 징구**하므로, **신청서 제출시에는 서류 제출 불필요, 향후 자부담금 예산집행 내역서 확인** 예정
② **지정품목별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 인원 기준 외 추가 고용(기준'23.12.)** 가점기준: 5명 3점 / 4명 2점 / 3명 1.5점 / 2명 1점 / 1명 0.5점 / 0명 0점	⇒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서 **근로자 현황 출력·스캔 파일 제출**(시설명 표기必) (Q9-② 관련 증빙자료 작성 방법 참고)
③ **최근 3년('21~'23) 내 직업재활 및 우선구매 유공 포상(장관 표창 이상)** 가점기준: 생산시설 포상 3점/ 생산시설 근로자 1점/ 해당없음 0점	⇒ 공모 참여 **생산시설 또는 생산시설 소속 직원이 받은 표창장 사본** 제출 * 직원의 경우 생산시설장의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스캔파일을 함께 제출

[Q9-② 관련 증빙자료 작성 방법]

Q9-② 지정품목별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 인원 기준 외 추가 고용(기준'23.하반기.) 샘플 화면

★ 하기 화면처럼 캡쳐하여 출력하고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

- ①시설명, ②장애인근로자 현황, ③근로자 비율 표기必, 미표기시 가점 인정 불가

(시스템 경로) 우선구매관리시스템 → 시설자원관리 → 근로자현황 → 근로자비율



Q10)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생산시설 매출 현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시 '생산시설 매출 현황'은 **아래 절차를 확인하신 후 작성**하시면 됩니다.

Q10) 생산시설 매출 현황 샘플 화면

(시스템 경로) '우선구매관리시스템' 접속 → 좌측 메뉴 중 '판매관리' 클릭 → '시설매출현황' 클릭 → 구매기관, 지정품목 '전체'로 설정 → 전표작성일자는 해당 년도(21년~23년) 각각 1월1일 ~ 12월31일로 설정

① 구매처구분 '전체' 설정 - 검색 - 조회된 값의 하단 맨우측의 합계금액을 사업계획서의 매출 현황표 '계' 란에 입력
② 구매처구분 '공공기관(우선구매+일반)' 설정 - 검색 - 하단 맨우측의 합계금액을 사업계획서의 매출 현황표 '공공판매' 란에 입력
③ 위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값을 '비공공판매' 란에 입력
④ 매출처(주요납품처) 입력



Ⅲ 생산시설 선정 심사 관련

Q11) 선정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?

□ 심사는 **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진행**되며 심사는 **서류심사(30%), 면접심사(70%)를 종합하여 종합점수 합계(60점) 이상의 생산시설 중 고득점 생산시설을 선정**합니다.

○ **서류심사는 제출하신 서류로 심사가 진행**되고, **면접심사는** 서류심사를 통과한 **생산시설별로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(PT자유양식, 약 10분)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**됩니다.

○ 심사위원회는 **외부 전문 심사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여 운영**하겠습니다.

Q12) 심사 평가 항목은 무엇인가요?

□ 동 공모사업 **신청서,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**되므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는 **각 비율, 사업계획, 향후 방안 등을 충실하게 작성을 요청**드립니다.

○ 서류심사 기준은 시설환경 20점, 사업계획 50점, 자금계획 20점, 적정성 10점, 가점 10점이고

○ 면접심사 기준은 역량 및 기술 30점, 조사 및 운영 20점, 가능성 30점, 사업위험 분석 20점입니다.